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20일(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9. 26. 경수현의원 외15명 발의(의안번호197호)
- 나. 회부일자: 2023. 10. 12.
- 다. 상정일자: 제2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10. 17.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의원 경수현)

가. 제안이유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안전감시원의 활동을 자원봉사활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관리계획 수립 시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구청장으로 하여금 관리주체에게 CCTV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안 제9조)

- 2) 구청장으로 하여금 관리계획 수립 시 구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 3) 안전감시원의 활동을 자원봉사활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기구¹⁾의 관리주체에게 CCTV 등의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

제2조(정의)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6. 22.>

어린이놀이시설(제2조 관련)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9.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3.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14.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1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해당 건축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을 하는 자가 야영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안전감시원의 활동을 자원봉사활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 2023. 7. 26.기준, 총 489개소이며, 성북구청장이 관리감독해야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총 393개소임

성북구청장 관리감독 (393개소)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관리감독 (96개소)	
도시 공원 ²⁾	식품접 객업소	아동복 지시설	어린이 집	주택 단지	놀이제공 영업소	종교 시설	유치원	학교
47	2	1	40	296	2	5	41	35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제3조(관리계획 수립)³⁾에 안 제3조제2항제8호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17.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1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20.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 2)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은 47개소이며, 그 중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원은 장위동 맑은숲어린이공원 등 9개소

- 3)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해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검사기관의 안전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놀이시설 사용자 안전 수칙 고지를 위하여 놀이 시설이용 준수사항, 배상 책임보험, 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

-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
- 안 제3조제3항으로 구청장은 관리계획 수립시 어린이놀이기구를 이용하는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 안 제9조는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4)에 따라 조례 제9조5)에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안전감시원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안 제9조제2항을 신설(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활동으로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하여 안전감시원의 활동을 자원봉사활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9조제3항은 구청장은 어린이놀이기구의 관리주체에게 CCTV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놀이기구 전수실태 조사, 안전관리자 현장 연수 등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제12조(어린이놀이기구 안전감시원)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어린이놀이기구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정한다.

5) 제9조(안전감시망) 구청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의 이용자 안전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어린이놀이기구 관리주체에게 CCTV 설치를 권고하고, 안전감시원의 활동을 자원봉사활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20일(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9. 26. 이관우의원 외11명 발의(의안번호198호)

나. 회부일자: 2023. 10. 12.

다. 상정일자: 제2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10. 17.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의원 이관우)

가. 제안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을 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2) 의용소방대 지원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3) 의용소방대 지원절차 등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4) 의용소방대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5) 의용소방대 지원 중단에 관한 규정(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조례안은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으로 각종 재난현장에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용소방대**⁶⁾에 대하여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⁷⁾에 따라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의용소방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법 제16조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법 제7조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

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의용소방대법)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읍 또는 면에 둔다.

7) 제15조(소집수당 등) ①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8)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 보조,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업무 보조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위해 설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용소방대는 현재 7개대 181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성북구 의용소방대 현황(2023. 7. 27. 기준)

구 분	계	혼성대	여성대	전문대	중암지대	돈암지대	길음지대	장위지대
정 원	180	40	40	20	20	20	20	20
현 원	181	39	41	20	21	20	22	18

○ 조문별 주용내용은,

- 안 제1조는 법에 의해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의용소방대로 규정함.
- 안 제3조는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4조에서 보조금 지원 절차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5조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에게 제출토록 규정 하고 있으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안 제6조에서는 목적 외의 용도 및 기타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하여 교부 받았을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7조는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포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본 조례안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보조하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최근의 화재가 대형화되고, 물적, 인적 피해 또한 점점 커지는 추세에 의용소방대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보며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20일(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9. 26. 김경이의원 외 15명 발의(의안번호199호)

나. 회부일자: 2023. 10. 12.

다. 상정일자: 제2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10. 17. 상정 · 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의원 김경이)

가. 제안이유

본 조례의 상위법이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6.)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환경교육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2)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법령 용어 정비
- 3)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4) 공무원 환경교육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9조)

5) 환경교육의 위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1조)

6) 홍보 및 포상과 관련한 조항 신설(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2022. 1. 6. 시행)됨에 따라, 이를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법령 용어 정비(안 제1조, 제2조)
「환경교육진흥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5조 : 전부개정 전 조례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 기본 조례」 제23조의 ‘성북구 녹색환경정책추진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하도록 하였으나, 본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12조의 ‘성북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변경함.

- 안 제6조에서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대상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을 포함하여 대상의 폭을 넓힘.
- 안 제9조에서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 안 제10조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법 제25조제2항9)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업무와 운영, 위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안 제11조에서는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과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기관, 그 밖의 전문 기관 및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 안 제12조에서는 환경교육과 관련한 경비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보다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안 제14조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9)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지역환경교육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되, 그 밖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구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 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제13조 제3항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근거 조항을 삭제한다.

나. 수정 내용

- 제13조 제3항을 삭제한다.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99
----------	--------

제안 연월일: 2023년 10월 20일

제안자: 행정기획위원회

1. 수정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제13조제3항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근거 조항을 삭제한다.

2. 주요내용

-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원안 ·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3조(실비지급 등) ①·② (생략) <u>③ 환경 분야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대 등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u>	제13조(실비지급 등) ①·② (원안과 같음) <u><삭 제></u>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20일(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9. 26. 정운주의원 외8명 발의(의안번호200호)

나. 회부일자: 2023. 10. 12.

다. 상정일자: 제2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10. 17.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의원 정운주)

가.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생활악취 발생으로부터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불쾌감과 건강상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악취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질적인 악취문제로 인한 환경갈등과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를 통하여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2) 지원사업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조례안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7¹⁰⁾에 따라 악취검사, 기술진단, 악취방지시설 및 저감시설 설치 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조문별 주용내용은,

- 안 제1조는 생활악취를 방지 및 저감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는 “악취”, “생활악취”, “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며,
- 안 제3조는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4조는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5조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생활악취 배출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으며,
- 안 제6조는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생활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정화

10) 제16조의7(생활악취 관리) ① 시·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한다)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다.

조 배수조에 대한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사업비 등을 법 제3조11)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저감 및 관리하여 구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11)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20일(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0. 5.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184호)

나. 회부일자: 2023. 10. 12.

다. 상정일자: 제2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10. 16.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감사담당관 정표근)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운영하는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표준안에 맞춰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납세자에게 혼란 및 불편을 줄 수 있는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 처리절차를 행정안전부 표준안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정비(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¹²⁾와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 민원 처리 절차를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표준안제16조¹³⁾에 맞춰 안 제16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제1항 및 제2항의 문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종결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문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제정됨.

- 2011년 제정된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임의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었으나, 자치단체의 관심 부족과 독립성 미흡 등으로 운용실적이 저조하여 2017년 12월 26일 공포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음.
-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에 대해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주는 제도로,
- 성북구에서도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업무처리 방법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27일 조례를 제정하였음.

13) 표준안 제16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3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2회 이상 반복 → 3회 이상 반복
-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 →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
-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 →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은 종결처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복되는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규정이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상위법 및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고려하여 납세자 보호 관련 규정을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20일(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0. 5.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185호)

나. 회부일자: 2023. 10. 12.

다. 상정일자: 제2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10. 16.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가. 제안이유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일부 개정(시행 2023. 6. 28.)에 따라 우리구 자치법규의 만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민법 및 행정기본법」(만 나이 통일법) 일부개정에 따라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여 정비(안 제1조~안 제9조)
- 2) 기타 띄어쓰기 및 항 번호 매김 수정(안 제3조, 제4조,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민법」 제158조¹⁴⁾ 및 「행정기본법」 제7조의2¹⁵⁾의 일부개정(시행 2023. 6. 28.)에 따라 우리구 자치법규의 만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재 우리나라는 법률상 「민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라 ‘만(滿)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되어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음.
- 이러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및 계약체결 등에 국민들의 혼선과 법적 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국제적 통용 기준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

14)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27.]

15)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고, 각종 정책과 공문서상 나이는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여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사회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하여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게 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제2조제1호 : “만 24세” → “24세”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 “만 65세” → “65세”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 “만 65세” → “65세”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만 13세” → “13세”,

같은 항 제3호 : “만 16세” → “16세”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만 18세” → “18세”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 “만11세에서 만12세” → “11세에서 12세”

같은 조 제2호 : “만13세부터 만18세” → “13세부터 18세”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 “만6세에서 만12세” → “6세에서 12세”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의 표 대상란 : “만 18세” → 각각 “18세”, “만 19세” → 각각 “19세”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제1호 : “만65세” → “65세”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우리구 자치법규의 만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20일(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0. 5.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186호)

나. 회부일자: 2023. 10. 12.

다. 상정일자: 제2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10. 17.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가. 제안이유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통합적 ·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CCTV 안전망 통합플랫폼 연계 운영을 시작함에 있어, 관내 유관 기관별 협조 운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1) 제명 개정 및 제명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 2) 관제요원 근무 내용의 명문화(안 제13조)
- 3)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안전망 통합플랫폼 연계 운영 조문 신설(안 제2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CCTV 안전망 통합플랫폼 연계 운영을 시작함에 있어, 관내 유관 기관별 협조 운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 성북구 통합관제센터¹⁶⁾ 현황

- 개소일 : 2013. 1. 18.(사업기간 2012. 7. 17 ~ 2012. 12. 30.)
- 사업예산 : 16억1,700만원(국비 5억1백만원, 시비 1억6,600만원,
구비 9억5,000만원)
- 구축장소 : 구청 4층(면적 230m²)
- CCTV연동현황 : 1,391개소 4,033대

(2023. 7. 31. 기준)

목 적	합 계	방법	어린이 안전	공 원	공 공 화장실	초·중·고 교 내	교통정보 수 집	주 정 차 단 속	재 난 재 해
개소 (대수)	1,391 (4,033)	967 (2,983)	164 (450)	110 (260)	15 (38)	2 (10)	17 (18)	79 (235)	37 (39)
예산부 서		도시안전과	교통안전과	공원녹지과	창의경제과	교육청	도시계획과	교통사업과	치수과
관 제		도시안전과						교통사업과	치수과

- 근무인원 : 23명(도시안전과 2, 경찰 4, 모니터링요원 13, 불법주정차 단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제9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① 구청장은 CCTV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으로 하며,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CCTV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시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속 1, 유지보수업체 3.

- 관제센터 운영 효과 : 설치 전·후 5대 범죄 발생 현황 비교

구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증감율(%)	-63.6%	-88.5%	-3.7%	-47.9%	-37.4%
‘10~ ‘12년 평균(건수)	11	26	161	2,028	2,316
‘18~ ‘22년 평균(건수)	4	3	155	1,056	1,449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조례 목적, 정의, 적용범위 항목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 제2조(정의) 제1호 : “CCTV”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변경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시켜 범위를 폭 넓게 규정함.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통합관제센터
- 안 제13조 관제 전담요원을 관제요원으로 변경하고, 2024년 공무원 전환(13명)을 앞두고 관제요원 근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안 제27조(CCTV 안전망 통합플랫폼 연계 운영)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등과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내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관내 경찰서, 소방서 등 CCTV 안전망 통합플랫폼 연계 조문을 신설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20일(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0. 5.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187호)

나. 회부일자: 2023. 10. 12.

다. 상정일자: 제2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10. 17.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가. 제안이유

공정무역 인식 제고와 공정무역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거점 시설인 성북구 공정무역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2023.12.31)에 따라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 재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대상 :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시설명	소재지(행정동)	시설규모	(현)위탁법인	위탁기간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개관:2016. 8.)	성북구 동소문로22길 33-8(동선동1가)	· 대지면적:108.3㎡ · 연면적:77.36㎡ · 1층 교육장 2층 홍보·체험관	(주)트립티	2021.01.01.-2023.12.31 (3년)

2) 위탁기간 : 2024. 01. 01 ~ 2024. 12. 31 [1년]

3)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사 및 선정

4) 위탁사무내용

- 공정무역센터 운영 및 사업 기획
-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 추진(교육·홍보·생태계 조성 등)
- 위탁 대상 관련 시설물 관리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동의안은 공정무역 인식 제고 및 공정무역 소비 시장 확대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거점 시설인 성북구 공정무역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 (2021. 01. 01. ~ 2023. 12. 31. 3년, 주)트립터) 중이나,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성북구 공정무역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17)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가. 주요내용

- 성북구 동소문로22길 33-8(동선동1가, 대지 108.3㎡, 연면적 77.36㎡)에

17)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치한 공정무역센터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사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 25조¹⁸⁾에서 규정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하여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 1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민간위탁의 타당성

- 공정무역센터는 공정무역 활성화 지속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공정무역 판매처 확대, 공정무역 관련 사업 발굴, 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등 공정무역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음. 이러한 센터 운영 전반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관(官) 주도의 사업 추진으로는 민·관 자원의 결합 및 민간주체역량을 극대화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18) 제25조(공정무역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센터(이하 “공정무역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② 구청장은 공정무역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1.5.)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신설 2016.7.14.)

③ 구청장은 공정무역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1.5.)

④ 제2항에 따라 공정무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5.11.5.) (개정 2020.12.31.)

- 따라서, 공정무역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민간 주체들의 풍부한 현장경험과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정무역 조직의 발굴과 유기적 소통을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체계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은 타당성 있다고 사료됨.

다.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

- 「지방자치법」 제117조¹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5조제2항²⁰⁾에서는 공정무역

19)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 제25조(공정무역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센터(이하 “공정무역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② 구청장은 공정무역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1.5.)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21)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을 법인·단체 등에 민간 위탁 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조례’ 제5조제6호22)에 ‘공정무역’ 사무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센터는 민간위탁 사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라. 민간위탁 기간 및 선정 방식의 적정성

- 위탁기간은 ‘1년’ 으로 하고 있으며,
- 수탁기관 선정 및 모집방법에 대해서는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5조제4항23)에 따르면 ‘공정무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신설 2016.7.14.)

21)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22)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6. 사회적 기업, 공정무역, 마을 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23) 제25조(공정무역센터의 설치·운영) ④ 제2항에 따라 공정무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1항²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과 같은 조 제2항 ‘성북구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추진하려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마.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법’, ‘민간위탁 조례’ 및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신설 2015.11.5.) (개정 2020.12.31.)

24)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20일(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0. 5.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188호)

나. 회부일자: 2023. 10. 12.

다. 상정일자: 제2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10. 16.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가. 제안이유

자치구 조례에 직원 후생복지 시설로 구내식당을 포함하라는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 요청에 협조하고, 사업의 대상, 종류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소속 공무원 정의 변경(안 제2조)
- 2) 적용 대상 정비(안 제3조)
- 3) 후생복지시설에 ‘구내식당’, ‘직장 어린이집’ 포함(안 제6조)
- 4) 후생복지시설 확보 · 운영 가능 명시(안 제6조)
- 5)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예방접종 지원 등 사업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²⁵⁾에 따라 직원 후생복지와 관련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2조제1호 : “소속공무원”의 범위에서 ‘구의회사무국’를 삭제한 바,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2022. 1. 13. 시행)²⁶⁾에 따라 지방의회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였기 때문임.
- 안 제3조제2항 : 적용범위 관련 사항으로 구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구의원 포함)을 적용 대상²⁷⁾에 포함하였으며, 공무원, 청원경찰 등 구에 소속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3조제3항 : 적용범위를 확대 규정한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

25)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1. 10. 8.>

26)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27) 2021년 12월 31일 체결된 「성북구-성북구의회 인사운영협약서」 제4조(협력분야)에 따라 맞춤형복지제도, 휴양시설 등의 후생 제도가 통합 운영되고 있음.

한한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

- 안 제6조는 기존 후생복지시설에 구내식당, 직장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시설의 종류를 명확히 하였는데, 이는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의 권고사항을 수용한 것임.
- 안 제7조제6,7호 후생복지사업 중 기 시행중인 건강검진비 지원, 체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예방접종 지원, 단체보험 가입을 추가하여 후생복지 지원을 확대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고 후생복지 시설로 구내식당을 포함하고 예방접종 지원 및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직원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20일(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0. 5.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189호)
- 나. 회부일자: 2023. 10. 12.
- 다. 상정일자: 제2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10. 16.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가. 제안이유

홍보대사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북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홍보대사 임무(안 제2조)
- 2) 홍보대사 위 · 해촉(안 제3~4조)
- 3) 홍보대사 예우 및 보상(안 제6조)
- 4) 홍보대사 콘텐츠 저작권 등(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조례안은 홍보대사 위촉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홍보대사(弘報大使)란 사업이나 상품, 업적 따위의 홍보 활동을 대표하여 담당하는 홍보단을 뜻하며 홍보대사는 거의 직위가 없음. 홍보대사로는 주로 연예인(배우, 연극인), 가수, 유명인, 운동선수 등을 위촉하고 있으며, 이들은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행사나 홍보를 하고 있음.
- 민간기업 뿐만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도 해당 부처 및 지방정부의 정책이나 지역 소개를 위하여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이나 전문가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우리 구는 2008년 구청장 방침으로 성북구 홍보대사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배우 정보석, 전원주 등 7명의 홍보대사가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이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대사를 활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조문별 주요 내용

- 안 제1조(목적)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로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임무)는 홍보대사의 임무로 성북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활동, 구정홍보 및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을 홍보대사의 역할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위촉)는 홍보대사의 자격에 관한 조항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구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등으로 정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 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대사 위촉 사례를 보면 세계적으로 알려진 K-POP 가수, 아이돌 및 유명 연예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안 제4조(해촉)는 홍보대사의 해촉에 관한 조항으로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홍보대사의 위촉을 해제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운영)는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홍보대사의 위촉과 활동에 대해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예우 및 보상)는 홍보대사의 예우 및 보상에 관한 조항으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의전에 필요한 예우를 하며,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7조(저작권 등)는 홍보대사의 저작권에 관한 조항으로 홍보대사

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등이 구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

- 성북구 정책이나 지역사회를 소개를 위하여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이거나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홍보 효과를 보다 극대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홍보대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홍보대사를 활용할 경우 정책의 인식수준, 홍보 기관의 인식 수준에 영향이 있고, 홍보대사의 유명도, 매력도 차원에서도 홍보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최근 소셜미디어(SNS 등) 활용을 통해 빠른 속도의 공유와 전달로 사람들에게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기술과 현상을 감안한다면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홍보대사 운영은 자치사무²⁸⁾로서 조례 입법에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28)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